의안번호	제80	03호	
의 결	2024년	월	일
연월일	(제	회)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11월 15일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지윤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3

발의연월일 : 2024년 11월 15일

발 의 자 : 안지윤, 최정훈, 김국기

박재주, 안치영, 오영탁,

조성태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2023.8.22.)됨 에 따라 법령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 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O 상위법령에 맞춰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개정(안 제17조)
 - 무상사용 기준일 : 기부채납일 → 사용허가일
- O 타법령 개정에 맞춰 법령 명칭 및 조항 개정(안 제29조제4항제3호, 제32 조제3항제2호다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10조
- O 법령 개정에 맞춰 사용·대부료 분할납부 기준금액 및 분할납부 횟수 조정(안 제35조제2항)
 - 분할납부 기준금액 100만원 → 50만원, 횟수 6회 → 12회
- 충청북도 관사 운영 실정에 맞게 제55조(관사 운영비 부담)의 정비 (안 제55조제1호 ~ 제4호)
 - 기존 제2호 및 제4호(안 제2호 및 제3호)

- · (현행) 관리비(1급 또는 2급 관사에 한한다) → (개정) 관리비
- · (현행) 경비(1급 또는 2급 관사만 해당한다) → (개정) 경비
- 기존 제3호, 5호 및 6호 삭제
- 제4호 신설(안 제4호)
- 4. 관사 사용자가 없는 경우 공공요금 및 기타 주택관리비 등
- O 법령 개정에 맞춰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금액 조정(안 제62조제1항)
 - 100만원 → 50만원, 200만원 → 100만원, 300만원 → 150만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역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나. 관련부서 : 행정국 회계과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

라. 조례안예고 : 예고대상(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따르며"를 "따르며,"로,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를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로 한다.

제29조제4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제2호다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10조"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100만원"을 "50만원"으로, "6회"를 "12회"로 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있다.
 -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 3. 응접세트, 커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4. 관사 사용자가 없는 경우 공공요금 및 기타 주택관리비 등 제62조제1항제1호 중 "100만원"을 "5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300만원"을 "15 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등의 납기 적용례) 제35조제2항, 제62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 24년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부터 적용한다. 혂 햀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 1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 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도지사 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생 략)

-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 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 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 다.
 - 1. · 2. (생략)
 -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 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 6. (생략)

제32조(사용료·대부료의 감면) 제32조(사용료·대부료의 감면) ①·② (생 략)

③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일반재 ③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일반재

아 개 정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 1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 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29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제29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 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 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 다.
 - 1. · 2. (현행과 같음)
-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 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 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 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 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 자가 대부하는 경우

4. ~ 6. (현행과 같음)

- ①·② (현행과 같음)

산의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략)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 당하는 경우 : 대부료의 100분 의 50

가. · 나. (생 략)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 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 용정책 기본법」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 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 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 부하 경우

3. (생략)

④ (생략)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 략)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경우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 부하게 할 수 있다.

산의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현행과 같음)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 대부료의 100분 의 50

가. · 나. (현행과 같음)

-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 별법」제10조에 따라 지정 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 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 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 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 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 3. (현행과 같음)
- ④ (현행과 같음)

|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 행과 같음)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자를 붙여 연 6회 이내 분할납 를 붙여 연 12회 이내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 ③ 삭 제
- ④ (생 략)
-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 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 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 공작물·구축물 시설비, 보일 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 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 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또 는 2급 관사에 한한다)
- 3. 보일러 운영비(1급 또는 2급 관사에 한한다)
- 4. 응접세트, 커텐 등 기본장식물 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 른 경비(1급 또는 2급 관사만 해당한다)
- 5. 전기·전화·수도 요금(1급 또 는 2급 관사만 해당한다)
- 6.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 리비(1급 또는 2급 관사만 해 당한다)

- ④ (현행과 같음)
- 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u>것을 원칙으로 한다</u>.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 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구축물 시설비, 보일 러, 에<u>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u> 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 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 3. 응접세트, 커텐 등 기본장식물 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 른 경비
 - 4. 관사 사용자가 없는 경우 공공 요금 및 기타 주택관리비 등

제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 부하게 할 수 있다.

- 1.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 2.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 3.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 ② (생략)

제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 부하게 할 수 있다.

- 1. 5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 납
- 2. 1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 3. 15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 ②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제3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계산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위기지역계획을 승인하고 산업위기대응특 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1. 해당 지역의 경기침체가 일반적인 경기순환 또는 전국적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침체가 아닌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 3. 산업위기지역계획이 타당한지 및 이행 가능한지 여부
 - 4. 그 밖에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지역에 대하여 현지실사 및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 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 립하여야 한다.
 - 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산업·경제 회복 정도 등을 평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지정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지정기간이 연장된 이후 만료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지역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추가적 인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⑧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6개월마다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 현황과 이 법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운영보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⑨ 그 밖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연장 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4항(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제1호

○ 사 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내용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 영한 것으로 별도의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